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과 학 기 술 분 야 정 부 출 연 연 구 기 관
등 의 설 립 · 운 영 및 육 성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('20.12.22.)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 추진 규정 마련(제2조의2 신설)

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 추진에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,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가 정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0. 00. ~ 00. 00.) 예정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본사업의 추진) ①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은
법 제5조의2에서 말하는 기본사업의 추진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
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기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기본사업 운영의 전반과 출연금의 관리
3.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기획, 선정, 협약 체결, 수행, 관리, 평가,
변경 및 중단(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선정,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
함)
4. 그 밖에 기본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기본사업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 또
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영 시행 전에 행하여진 기본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기본사업의 추진) ①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은 법 제5조의2에서 말하는 기본사업의 추진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</u> <u>1. 기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</u> <u>2. 기본사업 운영의 전반과 출연금의 관리</u> <u>3.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기획, 선정, 협약 체결, 수행, 관리, 평가, 변경 및 중단(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선정,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)</u> <u>4. 그 밖에 기본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 <u>② 기본사업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2 - 4751